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기획강좌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토크아보기

**일시** 2023. 10. 11 ~ 11. 08  
매주 수요일 14:00 ~ 16: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Contents

<b>01.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이해</b> .....	05
- 의의와 작동 매커니즘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b>02. 일반원칙 및 의무(제3조), 평등과 비차별(제5조)</b> .....	21
최완욱 (광주장애인인권센터장)	
<b>03. 장애여성(제6조)</b> .....	51
이진희 (장애여성 공감 공동대표)	
<b>04. 접근성(제9조)</b> .....	69
황현철 (전 광산구장애인복지관장)	
<b>05. 개인의 자유, 안전(제14조)</b> .....	93
정다혜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0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이해**

의의와 작동 매커니즘

조 은 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의의와 작동 메커니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은영 조사관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배경

- ▶ 2001년 53차 UN총회에서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제안  
“국제사회 차원에서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 5년간 8번의 국제회의의 진행, 118개국 이 참여, 80여명 이상의 장애인이 국가 대표로 참여
- ▶ 당사자가 조약제정에 참여한 최초의 국제조약
- ▶ 2006. 12. 13 UN총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 **한국은 2008. 12. 협약을 비준, 2009. 1. 10. 국내 발효**

- 협약 비준 당시 제25조e항(생명보험 관련 상법 제 732조 충돌 이유)과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보했다가 제25조e항은 2021년 12월, 선택의정서는 2022년 12월 비준하였음.

▶ **2023. 6. 기준, 협약은 187개국, 선택의정서는 104개국이 비준하였음.**



Country Status

State Party (186)

Signatory (8)

No Action (4)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cedure

Inquiry procedure



## 협약/조약이란 무엇인가?

- ▶ 조약 (Treaty): 예) 핵무기 비확산 조약,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
- ▶ 헌장 (Charter): 유엔헌장
- ▶ 규정 (Statute):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 ▶ 규약 (Covenant):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 협약 (Conventio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선택의정서
- ▶ 협정 (Agreement): 유엔과 화학무기금지 기구의 관계에 대한 협정



## 협약/조약이란 무엇인가?

- ▶ 국가 간에 서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해 놓은 것.
- ▶ '가입' 또는 '비준' 절차를 통해 당사국이 된 국가들에 한해 효력이 발생함.
- ▶ **가입(Accession)** : 단일절차로서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조약의 의무를 수용하고 당사국이 됨.
- ▶ **비준(Ratification)** : '서명+비준'으로 구성된 2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함. 조약의 '서명'은 향후 특정 시점에 조약 당사국이 될 것이며 그 이전에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후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가는 조약의 의무를 수용하고 당사국으로서 조약의 법적 구속을 받게 됨.



## 인권 협약/조약이란 무엇인가?

- ▶ 인권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문서로서,
  - 보편적 인권 기준을 인정
  -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
  - 국내 및 국제 모니터링 및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



## 유엔의 핵심 인권 조약 (9개)

-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66년)
-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1976년)
- ▶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1965년)
- ▶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1979년)
-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모멸적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1984년)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1989년)
- ▶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CRMW, 1990년)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2006년)
- ▶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PED, 2006년)



### 참고

### 우리나라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및 유보조항


협약명	가입여부 (가입일/발효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가입 (1990.4.10. / 1990.7.10.)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개인진정 절차)	미가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가입 (1990.4.10. / 1990.7.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가입 (1990.4.10. / 1990.7.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미가입
인종차별 철폐협약	가입 (1978.12.5. / 1979.1.4.)
여성차별 철폐협약	가입 (1984.12.27. / 1985.1.26.)
여성차별 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2007.1.18. / 2007.1.18.)
아동권리협약	가입 (1991.11.20. / 1991.12.20.)
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관여)	가입 (2004.9.24. / 2004.10.24.)
아동권리협약 제2선택의정서(아동 매매.성매매 등)	가입 (2004.9.24. / 2004.10.24.)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2008.12.11. / 2009.1.10.)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2022.12.15. / 2023.1.14.)
고문방지협약	가입 (1995.1.9. / 1995.2.8.)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미가입
강제적 실종으로부터의 보호협약	가입 (2023.1.4. / 2009.2.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가입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1992.12.3. / 1993.3.3.)



## 왜 ‘장애인권리’ ‘협약’ 을 제정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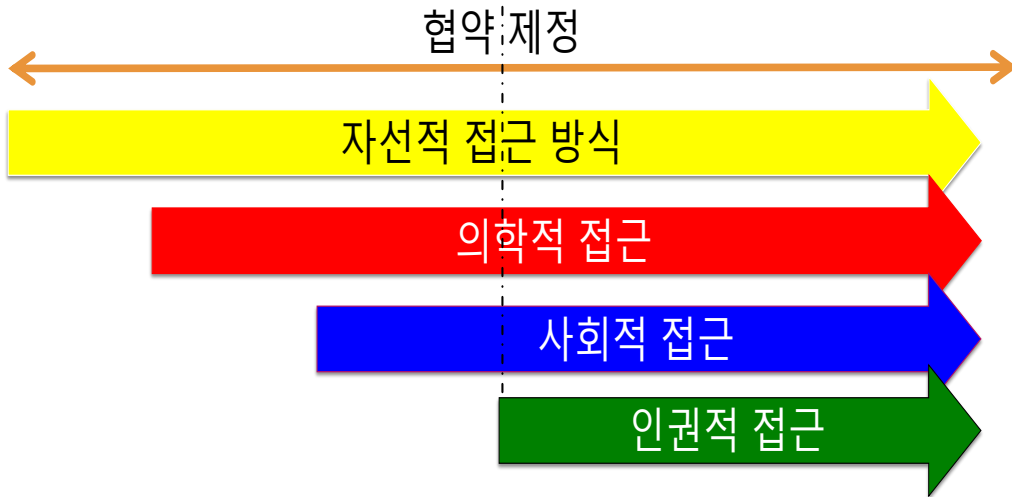
- ▶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보호 측면에서 세계인권선언과 기존 조약들의 한계 경험**
- ▶ **그동안 유엔 차원의 여러 노력은 있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변화에 한계 경험**
  - 지적장애인 권리 선언(1971)
  - 장애인 권리 선언(1975)
  - UN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1982)
  - UN 세계 장애인의 해(UN 장애인 10년, 1983-1992)
  -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1993)
-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을 통해 광범위한 장애인 인권침해 확인** 
  - 영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15년간 280만 건의 장애인 차별 사건 확인

## 왜 ‘장애인권리’ ‘협약’ 을 제정했나?

-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통해,**
  - 장애인의 권리 명확화
  -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책임을 명시
  - 장애에 대한 관점을 ‘권리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전환
  -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개발 촉진, 장애인의 참여 촉진
  - 국내 및 국제적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
- ➔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장애인 인권 증진 및 보호의 기반 마련**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이후의 변화 1\_관점

▶ 협약의 제정으로 변화된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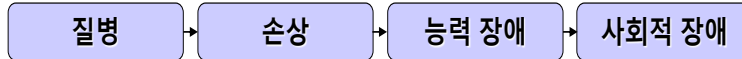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이후의 변화 2\_장애개념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  
는 것을 가로막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이 손상을 지닌 개  
인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야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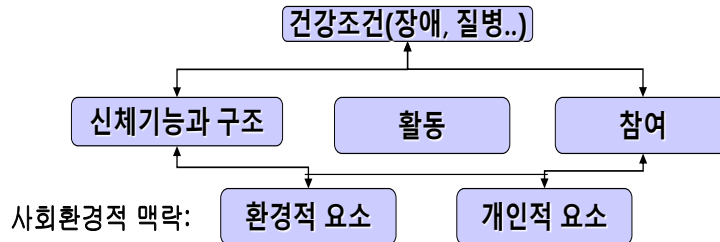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이후의 변화 2\_장애개념

▶ 협약의 제정으로 변화된 장애개념이 보편적 기준이 됨.

- ◆ WHO의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80)



- ◆ WHO의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1)



##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이후의 변화 2\_장애개념

### 개인적 요인

#### 물리적 (고유)

성별  
피부색  
장애유형  
중복여부

#### 사회경제적 (개별적 영향)

부유한 정도  
교육 정도  
문맹 여부  
고립 정도

### 환경적 요인

#### 환경 접근성

물리적  
정보적  
접근성  
보장 정도

#### 법률/정책

시혜/권리  
차별금지  
지원 법률  
집행 정도

#### 사회 경제적

농촌/도시  
부유한 정도  
장애 인식  
(긍정/부정)  
변화 수용도

#### 서비스

포용교육  
포괄적 의료  
보조기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사회지원서비스



##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제1조)

“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제3조)

-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차별금지(5조)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 기회의 평등
- 접근성
- 남성과 여성의 평등(6조)
- 장애 아동의 발전하는 역량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존중(7조)



##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의무(제4조)

- 누구에 대하여? (장애 정의 - 제1조 목적)

- 누가? (책임 주체)

- 당사국(행정부, 의회, 법원..을 통해 사적부문까지)

- 어떻게?

- 동시 접근법(twin-track approach) 채택 : 사회에서 장애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을 주류화 하는 방식과 개인의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개선하고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구
- 사회권의 경우, 점진적 실현을 위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
- 입법, 정책개발,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아동포함)의 참여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제적 조항(제9조~제30조)

접근(9조)/ 생명(10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11조)/

법 앞의 평등(12조)/ 사법접근성(13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14조)/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15조)/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

개인의고유성보호(17조)이주및국적의자유(18조)자립생활과사회통합(19조)

이동(20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21조)/ 사생활 존중(22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23조)/ 교육(24조)/ 건강(25조)/ 재활(26조)/

노동(27조)/ 사회보장(28조)/ 공적생활 참여(29조)/ 문화생활 및 여가 등(30조)

+ 통계와 자료수집(30조), 국제협력(3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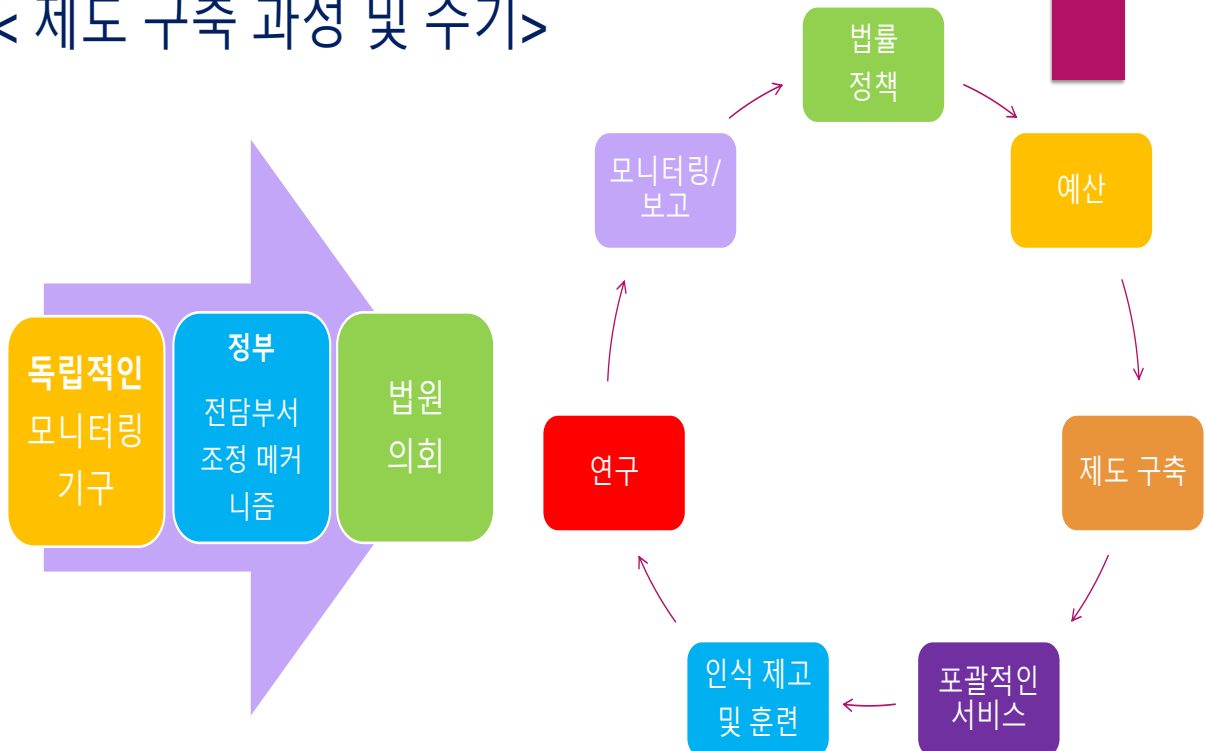
## 장애인권리협약의 작동 매커니즘 – 국가적 차원

### ▶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강제하나?

1. 협약 이행을 위해  
**전담부서(보건복지부) 지명, 정부내 조정기구(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지명**
2. 협약 이행을 증진, 보호, 감독하기 위해  
**독립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국가인권위원회) 지명**  
**+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등) 참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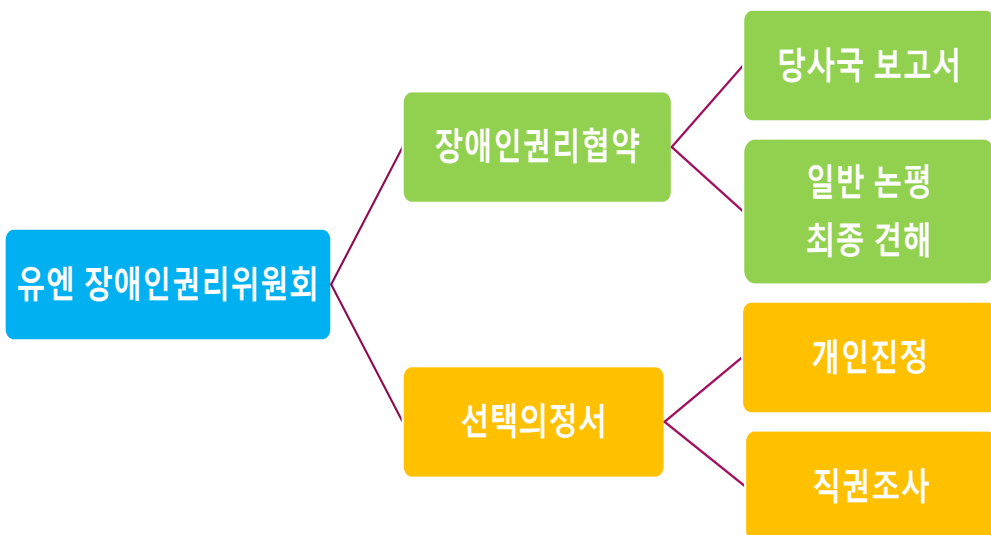
### < 제도 구축 과정 및 주기 >



## 독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 장애인권리협약의 작동 매커니즘 - 국제적 차원



## 장애인권리협약의 작동 매커니즘

### - 국제적 차원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 (구성) 총 18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보고관 1명 포함). 임기 4년.  
임원 임기는 2년. 재임 가능.
- (임무)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  
다음은 통해 협약에 명시된 조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권고 제공
  - 당사국의 협약 이행 관련 정기 보고서 검토 및 최종견해(권고) 제공
  - 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수행 및 권고
  - 협약의 일반논평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장애인권리협약의 작동 매커니즘

### - 국제적 차원 :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심리요건에 맞으면 접수하여, 심의 후, 권고 또는 기각  
→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권고 수용 여부 회신



## 장애인권리협약의 작동 매커니즘 : 국제적 차원 -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 ▶ 준사법적 절차.. 그러나,

- 서면 절차로 직접 조사나 청문회 없음
- 위원회에서 최종견해와 권고사항 제시, 법적 강제력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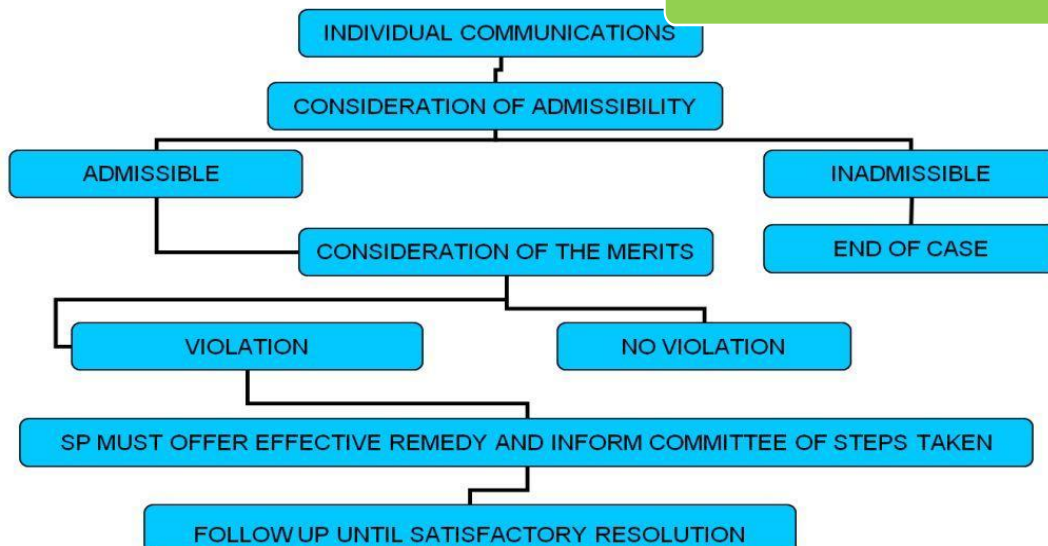
### ▶ 심리 적격 심사 기준

- ① 국가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나
- ② 비준 이후 사건이 발생했나(비준 이후까지 지속되면 접수 가능)
- ③ 접수 전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소진했나
- ④ 동일 사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됐거나 다른 국제 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 중인가
- ⑤ 익명으로 접수되었거나, ⑥ 진정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거나 근거가 명백히 부족한가



## 장애인권리협약의 작동 매커니즘 : 국제적 차원 - 개인진정 진행 절차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면, 본안 심의 전이라도 **임시조치** 요청 가능



## 장애인권리협약의 작동 매커니즘 : 국제적 차원 - 직권조사 진행 절차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위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수신

당사국은 6개월 안에 권고 이행 여부를 회신

당사국 정기 보고서에 보고 하도록 국가에 요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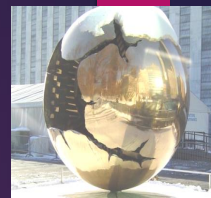
국가에 협조 요청

조사 결과, 의견 및 권고 사항을 당사국에 전달

▶ 개인진정과 달리, 직접 조사 및 청문 실시 그러나, 최종견해와 권고로, 법적 강제력은 없음.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위원회 구성원 지정

국가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국가 방문, 조사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 McKnight, 1995

*Nothing about us without us!*

# 02

## **일반원칙 및 의무(제3조), 평등과 비차별(제5조)**

최완욱  
(광주장애인인권센터장)





자동차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1개의 코스모스 길은  
관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  
사람에게는 이 가을을 남김없이 감출수있는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희주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전문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 이들의 존엄은 동등해졌는가?



## 존엄과 평등의 기준의 누구의 기준인가?

### 동등한 존엄을 위한 '구조'의 변화를 요구할 권리



## •모두를 위한 설계

## 주름발대 왜 만들었을까요?



## The Ramp House



# The Ramp House



집에서라도 **분리의 경험**을  
주고싶지 않았다



## 제3조 일반원칙

이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b) 차별 금지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 (e) 기회의 균등
- (f) 접근성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 제3조 일반원칙 - 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보편성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1.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실현 방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본 태도. 각 당사국 정부가 국내 법령이나 제도를 수립하고 해석을 적용하는데 검토할 수 있는 기준
2. 협약의 전 조항에 걸쳐 해석 및 응용의 기본 원리가 되며, 협약의 이행과 협약 목적의 실현을 위한 주된 요소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보편성과 장애인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1.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실현 방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본 태도. 각 당사국 정부가 국내 법령이나 제도를 수립하고 해석을 적용하는데 검토할 수 있는 기준
2. 협약의 전 조항에 걸쳐 해석 및 응용의 기본 원리가 되며, 협약의 이행과 협약 목적의 실현을 위한 주된 요소

## 권리는 승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능력에 따라 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강자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나 사회제도보다 인간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결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기와 관련된 중요한 일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생활속에서 실현된다.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한 기본권으로 기능 헌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같은 인격에 관한 권리로 인정된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 : 비인간적이게 대우 받지 않을 권리
- : 학대 받지 않을 권리

-비인간적인 대우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초래  
-학대는 심한 수치심을 불러일키거나 존엄성을 침해  
→ 매우 심각한 학대

### [사례] 요양시설, 병원, 거주시설, 방문돌봄 서비스 등에서

- 침구 (혹은 침대 시트)를 바꾸지 않는 것
- 욕창이 생기게끔 방치하는 것
- 당신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도한 힘
- 당신의 도움 요청을 통상적으로 무시하는 일
- 당신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당신을 씻기거나 옷을 입히는 일
- 이동식 변기에 묶어놓고 식사를 시키는 일
- 학대적인 대우 (욕도 포함)
- 다른 종류의 나쁜 대우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이 된다는 것

→ 스스로 인간답게 행동하여 자존하고 타인을 배려

→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생물의 세계나 우주의 환경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해야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다.

## (a)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a)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누구나 복지는 필요하지만  
누구도 복지가 삶의 전부인  
인생은 꿈꾸지 않는다!**

## 신안염전노예사건



**존엄하다는 것은 노예화되지 않는 것,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해  
타인에게 지배당하거나 물건 취급을  
받지 않는 것**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의 선택!**

김 모 씨 피해자  
동네 사람들이 망을 보더라고요. 또 전화를 하고...  
(사장이) 저희 있는 곳까지 찾으러 왔어요.

## 오징어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오든 광명을

왜 청소년들은  
게임에 쉽게 중독될까요?

**행복한 삶의 시작은  
자기결정권 존중으로 부터**

**자유로운 선택**

**성취감**

**연결감**

**행복추구권**

**첫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불행이나  
고통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는 것**

##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 **실수할 수 있는 자유!**

□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듯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자기결정능력  $\neq$  자기결정권**

**능력의 여부와 상관 없이 보장될 때  
권리일 수 있다**

# 자기결정권?

혼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결정한대로,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없다.**

인간은 '자유 안에서 스스로를 결정하고  
자신을 표출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어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최저기준을 중심으로 보장되는 권리**

# 人間, 사이 존재

- 자기 결정을 내리는 여러 사람들이
-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 서로의 의견과 판단을
- 소통하고 조율하며
- 실현할 수밖에 없는 권리.

**최저기준을 중심으로 보장되는 권리**

## 자기결정권의 최저기준

일정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관련 당사자의 의견과 판단을  
소통하고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보장되는 것.

- 예) 부부 사이의 성적자기결정권

**의사결정 대리? 의사결정 조력?**

## 도로의 논리와 길의 논리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산책하다가  
지팡이로 버섯 하나를 가리킵니다.

'얘야 이것은 독버섯이야!'

독버섯으로 지목된 버섯이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그를 부축하며 친구가 위로합니다.

비바람 불던 날 그가 보여준 따뜻한 우정을 이야기했  
지만

쓰러진 버섯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친구가 최후의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버섯인 우리들이 왜 '식탁의 논리'로

우리를 평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유(自由)는 자기(自己)의 이유(理由)로 걸어가는 것  
입니다.

신영복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하  
고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은 사람다움의 시작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더부살이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장애인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와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 (e)기회의 균등, (f)접근성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과 동등한 기회의 제공은 협약의  
목적들을 달성하고 이행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장애 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 3호 (2016)
- 젠더 평등은 인권의 중심에 있다. 평등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며 맥락 특정적인 기본 인권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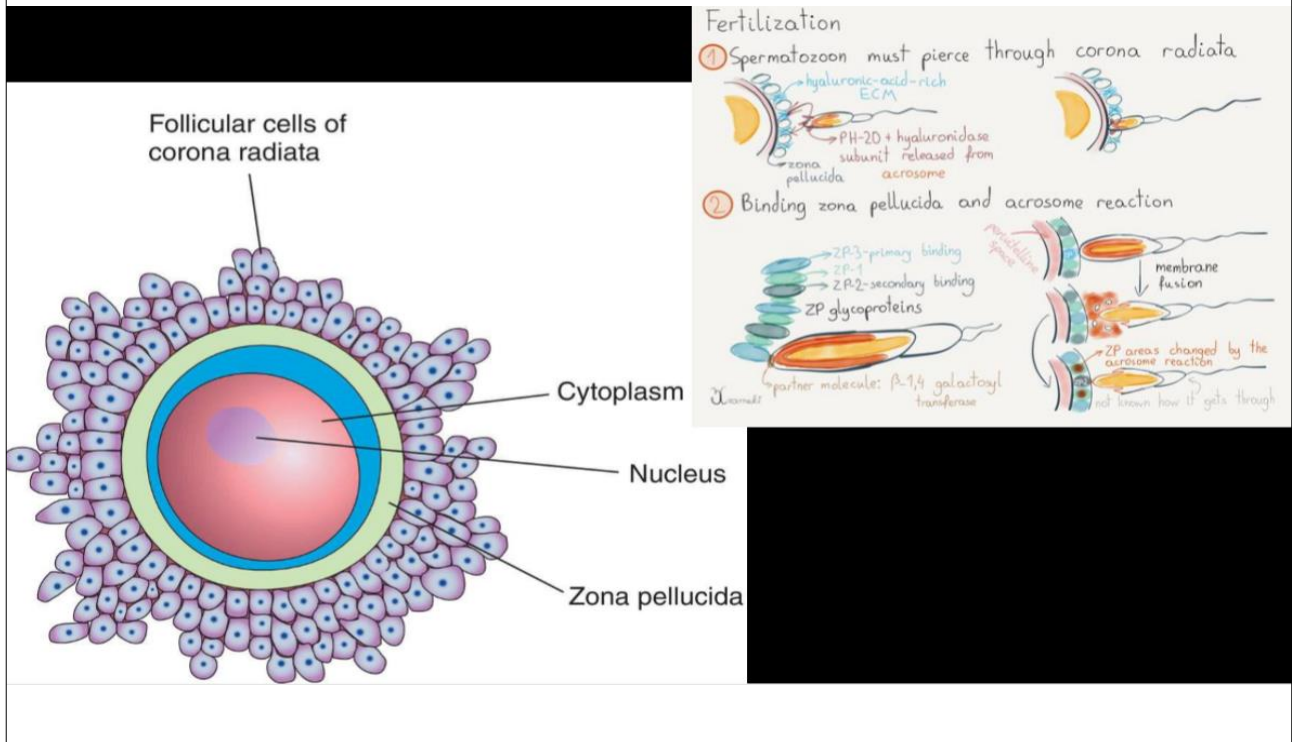
**다중차별** -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둘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복합 또는 가중차별로 이어지는 상황

**교차차별** - 여러 차별 근거가 불가분하게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상황

### 차별의 근거 사유

연령, 장애, 민족적·토착적·국가적·사회적 출신, 젠더 정체성,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인종, 난민·이민자·망명 신청자라는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지향성이 포함된다.

# 생물학에서 **지식이 된 편견**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 여성·여아의 인권에 관련한 세 가지 주요 문제  
**폭력, 성과 생식의 건강·권리, 차별**

- 장애 여성에 대한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의 만연함
- 법률 및 정책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함
- 젠더, 장애, 그리고 기타 요인에 의하여 장애 여성·여아가 겪는 차별
- 생명권
-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
- 장애 여성·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학대를 포함한 지속적 폭력
- 강제 불임 수술
- 여성 할례
- 성적·경제적 착취
- 시설화
- 공적 또는 정치적 생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장애 여성의 참여 부족 또는 결여
- 장애 정책 속 젠더 관점 포용의 결여
- 젠더 평등을 도모하는 정책 속 장애인 권리 관점의 결여
- 장애 여성의 교육과 고용의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부족 또는 결여

### **(b) 간접적 차별**

표면적 가치로 판단할 때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 여성에게 불공평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정책·관행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중립적으로 보이는 의료 시설도 산부인과 검진을 위한 접근 가능한 검진용 침대가 없다면 차별적인 것이다.

### **(c) 연계차별**

장애인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 여성의 경우 연계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구직 과정에서 장애 아동 때문에 업무 참여와 근무의 가능성이 저조할 것 이라는 우려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

### **(d) 적절한 편의의 거부**

장애 여성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하고 적합한 수정과 조정이 거부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장애 여성이 건축 환경의 물리적 접근성 결여로 인하여 의료 기관의 유방 촬영을 받을 수 없다면 이도 적절한 편의의 거부에 해당한다.

### (e) 구조적 또는 체계적 차별

차별적인 제도적 행위, 차별적인 문화 전통, 차별적인 사회적 규범과 규율 속에서 은밀하거나 또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한 젠더·장애 고정관념은 장애 여성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정책·규제·서비스의 부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폭력 사건을 신고하려는 장애 여성은 젠더와 장애의 교차를 바탕으로 한 고정관념에 의해 경찰·검사·법원의 불신과 기각과 같은 장벽을 마주할 수 있다.

장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적 신념의 예로는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HIV/AIDS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이 존재한다.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 여성의 발전·진보·역량강화

당사국은 장애 여성은 공공 영역에서뿐 아니라 가족 내 또는 민간 사회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도 다중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반드시 모든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란 법적, 교육적, 행정적, 문화적, 정치적, 언어적 또는 기타 특성을 가진 조치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조치는 장애 여성이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포함하여 협약의 원칙을 존중하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는 일시적일 수도, 장기적일 수도 있으며, 법률상의 그리고 실질적인 불평등을 극복해야만 한다. 할당제와 같은 일시적 특별 조치도 구조적 또는 체계적인 다중차별의 극복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 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나 정책의 개정과 같은 장기적 조치는 장애 여성의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 여성의 발전·진보·역량강화

모든 조치는 장애 여성의 완전한 발전·진보·역량강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발전이란 경제적 성장과 빈곤 퇴치와 관련되나,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교육, 고용, 소득 창출 및 폭력 방지의 영역에 있어서는 젠더·장애 감수성을 가진 발전 조치가 장애 여성의 완전한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적절할 수 있지만, 보건 및 정치·문화·스포츠 참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 여성의 진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는 발전의 목표를 넘어 장애 여성의 일생에 걸친 상황 개선 또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발전 조치를 계획할 때 장애 여성을 고려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 여성은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 여성의 발전·진보·역량강화

인권 기반 접근법에 따라, 장애 여성의 역량강화의 보장이란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장애 여성 참여의 촉진을 의미한다.** 장애 여성·여아는 역사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벽에 부딪혀 왔다.

**불균형한 권력과 다중적인 형태의 차별로 인해** 장애 여성이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비교적 적었다.

**당사국은 직접적으로 장애 여성·여아에 접촉하고, 이들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며 이들이 특히 성·생식 건강과 권리 및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에 관련하여 자신의 관점과 우려를 표현하는 데 있어 어떠한 보복에도 노출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장애 특정한 자문 기구와 메커니즘뿐 아니라 장애 여성 대표 단체의 참여 또한 촉진해야 한다.

##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로 채워지는지,  
그 사소한 것들이 막혔을 때 일상이 어떻게 중단되는지**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한다.**

**3. 당사국은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에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이 협약의 조항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호 (2018)

-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법률과 정책이 여전히 **자선 모델 또는 의료적 모델을 통하여 장애에 접근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그러한 모델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차별 대우, 배제는 당연한 규범으로 여겨지며, **의료적 시각에 따른 무능력 접근법에 의하여 정 당화된다.**
- 그와 같은 패러다임의 지속적 사용은 **완전한 권리의 주체이자 권리의 소유자로서의 장애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더불어 위원회는 **장애에 대한 태도적 장벽을 극복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그 예시로는 **장애인이 사회의 짐이라는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고정관념, 낙인, 편견을 들 수 있다.**

##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호 (2018) 장애인 혹은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고유성·평등을 부정당해 왔다.

- ▲ 동의 없는 또는 강제적인 조직적 불임 수술,
- ▲ 의료적 혹은 호르몬 기반 개입(가령 뇌엽절리술)
- ▲ 강제 투약 및 강제 전기 충격, 감금
- ▲ 안락사라는 이름의 조직적 살해
- ▲ 강제적 혹은 강압적 낙태
-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거부
- ▲ 특히 백색증 환자의 신체 부위의 절단과 거래와 같은
- ▲ 잔혹한 형태의 차별을  
포함해 다양한 차별이 발생했으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호 [2018]

- ▲ 평등과 비차별은 국제인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속한다.
- ▲ 평등과 비차별은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 ▲ 평등과 비차별은 모든 인권 조약의 핵심이다.
- ▲ 주제별 모든 유엔 인권 협약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의 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호 [2018] 협약은 포용적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포용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 모델을 수용하며,

- (a)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의 차원**,
- (b) 낙인· 고정관념·편견·폭력과 싸우고 인간의 존엄성과 교차성을 인정하기 위한 **인정의 차원**,
- (c)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본질 및 사회 포용을 통한 인류의 완전한 인정을 재확인하기 위한 **참여의 차원**,
- (d) 차이를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수용의 차원**

## 법 앞의 평등 및 법 아래의 평등에 관한 5(1)조

“법에 의해” 그리고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권리를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사법 집행 및 법률 집행 담당자는 사법 행정에서 장애인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법 아래의 평등이란 법적 관계에 참여할 가능성을 가리킨다.

법 앞의 평등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지만,

법 아래의 평등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은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 자체도 특정 사법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이 법 아래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부정·제약·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장애가 모든 법률과 정책에서 주류화 되어야

함을 의미

##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에 관한 5(1)조

• ‘법의 동등한 보호’ 라는 표현은 장애인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당국이 반드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접근성, 적절한 편의, 개별 지원이 주로 요구된다.

• ‘법의 동등한 혜택’ 이라는 표현은 모든 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이는 당사국이 법의 보호 일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또 권리 주장을 위한 법률·사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혜택을 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

## 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헌법 속의 인권 들여다보기 2

## 헌법 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인권 제한의 근거

- 제37조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1. 필요한 경우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 2. 법률유보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3. 적법절차의 원칙
- 4. 과잉금지의 원칙

## 적절한 편의에 관한 5(3)조

-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접근성의 의무와 다르다.
- 두 의무 모두 접근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또는 보조 기술을 통하여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는 사전적 의무이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지금부터의 의무이다.

- 접근성의 의무는 사전적이고 전체적인 의무이다. 사전적 의무로서 접근성은 특정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건물, 서비스, 제품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체계와 절차 내에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협약 4(3)조에 따라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 적절한 편의에 관한 5(3)조

(a) **지금부터의 의무로서 적절한 편의는**

어떤 장애인이 접근 불가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 접근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b) 특정 상황의 경우 제공된 적절한 편의의 결과는 집합적 또는 대중적 이익이 되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제공된 적절한 편의의 결과가 신청자에게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c) **적절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신청자와 협상되어야 한다.**

(d)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장애인이 편의를 요구하는 상황이거나 제공 의무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제로 **문제의 당사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증명 가능한 상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잠재적 의무 부담자가 어떤 사람이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장애물 제거를 위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어야 했으나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 어떤 세계를? 어떤 미래를?

모든 사람이 유능한 세계

취약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제 자신으로 존재하는 세계

어떤 손상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미래

고통받는 몸, 손상된 몸,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몸들을  
세계의 구성원으로 환대하는 미래

건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들만의 세계

서로의 불완전함,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의존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세계

# 03

## 장애여성(제6조)

이진희

(장애여성 공감 공동대표)



# 장애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모두를 위한 평등

이진희(장애여성공감)

※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모두를 위한 평등>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1. UN CRPD의 쟁점: 교차성

### ◇ 2016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6조 장애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

장애여성의 다중차별 및 교차차별을 인식하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장애여성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

### ◇ 2022년 8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정부 제2·3차 병합 심의

장애와 함께 작동되는 차별의 사유(구조)  
빈곤, 연령,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차별구조와 연동된 정책의 중요성

## ◆ 젠더관점 없는, 정책과 제도 위협받는 성평등 정책

-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주요과제 추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과 출산비용 지원/운영
- 장애인 고용장려금(여성의 경우 10만원 추가 지급)
- 성폭력상담소(22개소), 가정피해상담소(4개소), 폭력피해자보호시설(8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2개소)
- 2015년부터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전국적 확대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정책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교차차별을 분석/반영하는 정책 부재

시혜적이고 단회기성인 지원정책

젠더 기반 폭력피해 장애여성이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원정책 부재

##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공백

-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제공
- 「민법」 제807조와 제856조에서 결혼 및 가족구성(입양의 요건)에 관한 조항
-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비용 지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에 근거하여 산전·산후조리 도움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을 지원

◇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리 및 지원정책을

해당 조항의 지원정책으로 재설명 하는 문제

◇ 한시적인 바우처와 치유 중심의 바우처 정책 외

연애, 임신, 출산, 양육 등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권리의 모든 영역 부재

◆ UN CRPD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 보고서 최종전해

장애아동,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장애인, 간성장애인, 장애여성,  
난민과 이주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장애인과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단체와의 의미 있는 협의를 보장할 것,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장애에 기반한 차별과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UN CRPD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 보고서 최종전해

장애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모든 성평등 법률, 특히 제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주류화하고 성인지 관점을 장애정책과 프로그램에 주류화 할 것  
일반적인 장애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젠더 관점에 입각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수립되도록 보장할 것  
법률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할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역량강화와 완전한 참여,  
그리고 모든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 2.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 교차하는 차별의 구조

◇ 사례 1: 트랜스젠더 뇌병변장애여성A



정상성을 벗어난 장애여성을 상상하지 않는 사회

독립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신변조력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지원을 요청  
"남자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니다"라며  
신변보조 등 활동지원 거절

## 2.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 교차하는 차별의 구조

◇ 사례 1: 트랜스젠더 뇌병변장애여성A



트랜스젠더 장애여성 돌봄의 권리는?

차별과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부재  
실질적인 돌봄과정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로 인해  
중단된 경험,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돌봄 가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차별판단

'주된 원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임을 입증해야 함.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는 '장애'로만  
설명될 수 없음

## 2.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 교차하는 차별의 구조

◇ 사례 2: 중국국적 지적장애여성B



### 대안 부재,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장애여성

중국국적 어머니와 결혼한 계부에 의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경험이 있으나  
관광비자보다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가해자인 계부의 동의 필요,  
폭력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움  
또한 한국국적 장애당사자가 아니라  
한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일상지원,  
상담지원도 어려움

## 2.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 교차하는 차별의 구조

◇ 사례 3: 시설 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여성C



### 기대하지 않는 노동, 기대받지 않는 미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일자리,  
생산성 중심 업무평가로 인한 차별  
하지만  
더 나은 일자리 대안 부재  
노동환경에 대한 차별을 조력할 주변인 부재

## 2.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 교차하는 차별의 구조

◇ 사례 3: 시설 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여성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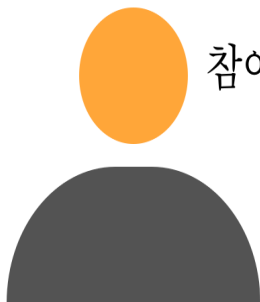
### 생산성 중심의 노동현장 속 장애여성

장애남성 고용률 77.8%, 장애여성 고용률 22.2%  
평균소득 118.9만원, 고용형태 78.5%가 비정규직  
전체인구 무학비율 3.5%, 장애여성 무학비율 19.1%  
전체인구 대학진학률 41.7% 장애여성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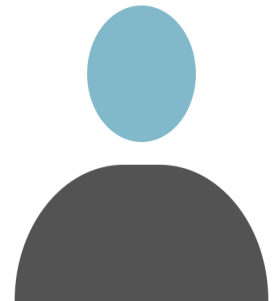
출처: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2020년 장애여성공감 발달장애여성 노동경험 인터뷰

참여자A: (7년을 일하는데) 나는 계속 청소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일은 내가 잘 못하니까 할 수 없어요.



참여자B: 시끄럽게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싸우면 화해해야 돼요.



장애여성의 경험=장애인이거나 여성만으로 환원될 수 없음

장애/성별/국적/노동/폭력이 모두 얽혀있음

장애여성이 겪는 차별은 그 **경험 자체로 복합적**  
장애여성과 성별정체성, 장애여성과 폭력, 장애여성과 노동권 등  
한 사례에서 동시에 차별이 드러날 때  
장애여성이 가진 정체성은 **교차**되지 못하고 **가중** 됨

### 3.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함께 후퇴하는 장애여성 정책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개정안  
구조적 성차별 부정

여성가족부 내 주요사업을 타부서 이관, 타사업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무력화  
젠더관점 폭력피해지원 및 다양한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존폐 위협

2023년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성평등 → 양성평등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책임 방기 ↔ '여성'을 인구정책수단으로 바라봄

2020년 12월 31일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미도입 및 건강보험 미적용

## ◆ 성과 재생산권리보장 법/제도의 공백

### ▲ 2019년 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12월 31일 낙태죄 폐지

- 우생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낙인을 찍은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유지
- 2020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있음

### ▲ 202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의료비 지원]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호에 의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만 가능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성폭력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신장애인으로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호(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및 의료비 지원 가능

## ◆ 성과 재생산권리보장 법/제도의 공백

### ▲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 2022년 12월 A제약회사가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시도
- 1년 5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A제약회사는 식약처가 요구하는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음.
- 식약처는 이를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방기하고 있음.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 등은 임신, 출산, 육아로 지원을 제한.  
성과 재생산 건강 전반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 위험을 강조하는 성교육, '정상성'을 강제하는 사회

### ▲ 2022년 11월 9일 교육부 2022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 '성평등' 삭제 →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문제' 변경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 → '성·생식 건강과 권리' 대체
- 디지털 성폭력 사업도 예산삭감 및 타사업 이관

### ▲ 2022년 3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폐기 의견

-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조장한다는 사유
- 서울시 교육청 민원, 동성애 옹호 '성평등강의 취소' 사건

## ◆ 위험을 강조하는 성교육, '정상성'을 강제하는 사회

### ▲ 2023년 9월 7일 여성가족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 삭감/폐지 입장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임
-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피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결과로서 시행
- 성인권교육은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에 중요하게 포함
- 해당 사업에 포함 된 디지털 성폭력 사업도 예산삭감 및 타사업 이관

위험하고 금지된 섹슈얼리티, 장애 당사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욕망과 욕구를 위협한 것으로 취급하여 시설화 시키고 배제

## ◆ 보호자 의사만으로 가능한 임신중지?

### ▲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정안 발표

-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정안 발표
- 2023년 2월 반성폭력운동의 투쟁으로 여가부 폐지안이 제외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있음.
- 반성폭력 운동 현장에서 장애여성·\*아동의 임신중지 및 피임시술은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이뤄짐.
- 성폭력 예방/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성재생산 영역에서 권리보장이 아닌 보호의 이름으로 권리침해 사례 발생

여성가족부 실질적 폐지는 아니나  
주요 사업을 효율성, 중복성, 수요감소 등의 이유로  
사업폐지, 타부서 이관, 타사업 흡수 시키는 방식  
스스로 무력화 시킴과 동시에 젠더관점 기반의 폭력피해지원 및 다양한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존폐 위협

## ◆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 감축

- 일반예산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의 삭감액 431억(4백3십1억5천3백) 중 33%의 비율을 차지
- 예산 삭감 사유: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

### ▲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통폐합, 인식개선 예산 삭감=성평등 퇴보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국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
-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며 예산 감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정책을 무력화
-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을 모두 삭감

폭력 재발 방지 및 전반적 사회적 인식 제고 예산 삭감

## 4. HIV/AIDS 감염인의 경험을 교차하는 장애 인정의 정치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의가 HIV/AIDS 감염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은 협약에 부합하여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해야한다는 것

유럽과 영국에서는 무증상 HIV감염인 역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차별, 특히 노동 차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해외사례에서의 쟁점은 장애를 변화하는 개념으로 간주하며 동등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하는데 방해를 받는 태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 결국 HIV감염인의 장애인정 요구는 '장애인'으로 인정하라는 외침이 아니라 복합차별을 맥락적으로 마주하라는 요구이자 반차별에 대한 저항

## 5. 탈시설과 성과 재생산권리

2022년 9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공개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및 일반논평 5호에 기반한 탈시설 지원계획은?

2021년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하는 지역사회 거주전환 계획

2023년 3월 <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23~2027)

- '탈시설' 용어 의도적 삭제
- 시설 소규모화 전환 명시
- 시설을 '주거 선택'의 하나로 인정

**탈시설 정책 후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위반사항**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전문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68>)

◆ 제 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23~2027)

분야별 핵심과제 8. 장애인 학대 예방, 정신·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현황

1. 출산비용 지원('22. 100만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중앙1, 지역 17개소) 및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건강보건관리 지원
2.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소 및 보호 시설 운영 중('00~)
3.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에 따라,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 추진 중 ('20.11월 국회제출)

## ◆ 제 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 ▲ 추진과제

1.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성권 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비용 지원단가 인상 추진
2. 장애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권리 보장
  -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19.4)에 따라, 장애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권리 보장을 위해 보자보건법 개정 추진
3.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추진 및 평가·컨설팅(3년 주기), 종사자 보수 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 및 돌봄비용 지원사업 지원 지속 추진

장애여성을 서비스 대상으로 단일하게 구분  
복합적 삶의 맥락 미반영  
시혜적이고 파편적인 정책

## ◆ 제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 ▲ 정책과제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정망 구축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제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 ▲ 아동돌봄 및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계획

- 다양한 양육자 지원 강화: 한부모, 청소년, 위탁가정 포함(장애인 제외)
  -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지원 확대  
/ 장애여성은 돌봄의 주체, 제도적 지원대상 아님

### ▲ 폭력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 및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지원 강화
  - : 법률개정, 사건 처리 대응체계기반 구축,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 피해자 지원과 연동 된 탈시설 및 탈가정 정책 부재  
(이주, 장애, 인종 등 여성 안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재고 희박)
    - 성주류화 기반,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아닌 사후 조치에만 집중(처벌여부, 쉼터, 상담소 등)

## 6. 성평등 정책이 반차별 정책이다.

- 장애인정책/여성정책에서 성평등 관점, '장애여성' 정책은 고려되지 않음
- 장애여성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여성 및 소수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 어려움
- 장애, 젠더, 인종, 성별정체성, 나이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장애여성의 권리실현이 아닌 '출산하는 여성'의 몸에 맞춘 제한된 지원정책 시행

## 7. 포괄적 차별금지 보편적 평등의 원칙

### ◆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 ◇ 2007년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曆) 등 **7개 차별사유 삭제 후 발의**

####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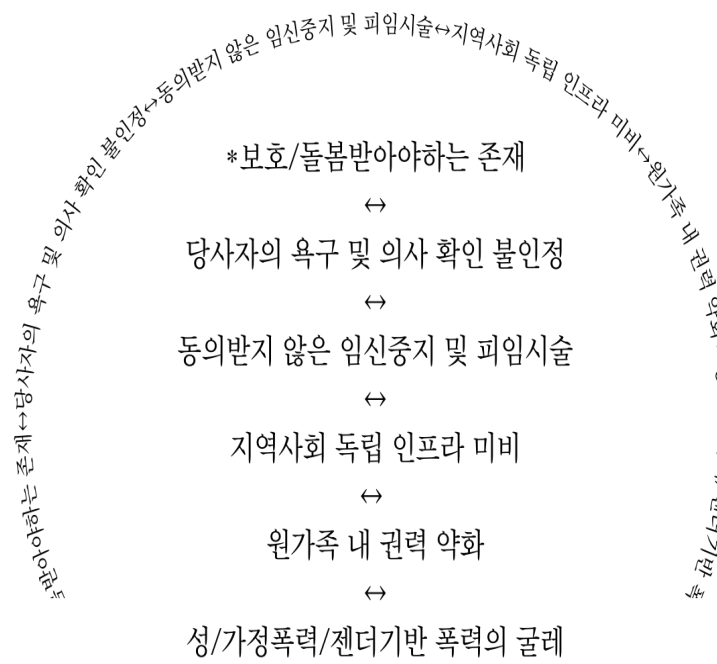
반대세력에 떠밀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차별금지법안 **자진 철회**

#### ◇ 21대 국회(2020-2024)

**반인권세력과 공모하는 혐오정치에 의해 추진되지 못함**

## 6. 포괄적 차별금지 보편적 평등의 원칙

**장애여성-장애아동-비혼/기혼 장애인들의 권리박탈 경험은 연결되어 있음.**



\*교차성의 정치는 교차의 영역에서 배제되어온 소수자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학을 통해 시작 될 수 있다.

장애여성운동은 장애인 안에 차이를 드러내며  
교차적 정체성과 복합차별을 드러냄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 수립 속  
장애여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정책 방향 마련 필요

취약한, 무능한, 더러운, 해로운, 불쌍한, 미성숙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배제당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교차성 정치 필요

\*여이연, [교차성x페미니즘], 1998,80p

감사합니다

# 04

## 접근성(제9조)

황현철

(전 광산구장애인복지관장)



# UN장애인권리협약 접근권(9조)

## 황 현 철

### 장애인의 정의

2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 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전문(e)항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정

3

- 2006. 12. 13 :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20개국 가입 비준)
- 2008. 5. 3 : 공식적으로 발효(184개국 협약, 선택의정서 104개국 비준)
- 2008. 12. 2 : 국회 본회의 통과
- 2009. 1. 10 : 국내 발효(최초 보고 2년, 4년마다 보고서 제출)
- 2011. 6. 22 : 제1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
- 2014. 9. 17~18 :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 2014. 9. 30 :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채택
- 2019. 3. 18 : 제2,3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
- 2022. 8. 24~25 :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 2022. 9. 5 :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채택
- 2031. 1. 11 : 제4,5,6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

## 접근권의 내용

9조 :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 및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이나 서비스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의 식별 및 철폐를 포함한다.

- 학교, 주거, 의료시설과 근무지를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
-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통신 및 기타 서비스

## 접근권의 조치 내용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a)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침의 이행을 위한 개발 공표 및 점검
- (b)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c) 모든 당사자들에게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한 훈련 제공

## 접근권의 조치 내용

- (d)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 설치
- (e)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인, 전문수어통역사를 포함한 현장 지원과 매개체의 제공
- (f)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장려

## 접근권의 조치 내용

- (g) 장애인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체제에 대해 접근하도록 장려
- (h)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술 및 체제에 접근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과 체제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유통을 장려

## 접근권의 신설 배경

접근성은 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며, 합리적 편의의 제공과 함께 장애인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 삶에 있어 필요한 기술, 수단,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인이 삶의 환경에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접근하게 될수록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항이 신설되었다.

## 접근권의 용어 정의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체적·시각적·청각적·인식적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과 서비스의 수단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혹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 혹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이 포함된다.

현장지원(live assistance):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지원인, 낭독인 등 인적 지원과 안내견 등 동물적 지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매개체(intermediaries): 보조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와 같이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수단을 의미한다.

## 접근권의 내용과 중요성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리적·인식적·문화적 장벽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의사소통 및 대중교통 수단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의 특성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접근권의 내용

접근성 증진의 대상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인 대중교통, 정보통신기술(관련 기술 및 시스템 포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다. 즉, 물리적 대상인 건물에 대한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인식적이고 기술적인 범주에까지 접근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 접근권의 의의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건물을 출입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 접근가능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에서 나아가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까지 그 범위는 확장된다. 결국 모든 지역에서의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참여를 저해하는 모든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지하철, 버스, 정보 혹은 의사소통 이용과 같은 모든 형태의 환경 및 조건들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근절하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 접근권의 의의

장애인에게는 교육, 의료, 정보이용, 근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정과 변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특징적으로 의사소통이나 감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 마련을 규정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접근성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 접근권의 의의

특히 정보접근성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장애인이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습득 및 공유 수단,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 접근권의 의의

장애인 정보화의 증진은 사회통합의 한 방편으로서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사회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역시 장애인을 이용자로서 배려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장애인도 접근·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에게 정보통신기기와 특수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 교육하며 비용을 보조해 주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접근권의 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안내서나 음성서비스,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이나 자막방송을 제공해야 하므로 정부기관이나 공공성이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사용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최소한 대인적인 서비스를 통해 편의를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접근권의 고민

중요한 점은 동 조항의 성격이 점진적 실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권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즉각적인 실현 의무를 부여하는가의 여부이다. 장애의 특성 때문에 비장애인과 달리 접근성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가 과도한 예산과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킬 의무는 즉각적인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즉,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문제와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 접근권의 고민

접근성을 높이거나 장벽을 철폐하는 사업이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그 사회의 가용자원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마련되어있지 못하며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부담이 크고, 가용 자원 및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점진적인 실천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해당 국가의 즉각적인 의무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가용 자원과 장애 인권의 현실 등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 다른 조항과의 관계

전문 (v)호: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9조에서 명시된 접근성에 대한 보장은 각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의 하나로서 요구된다.

## 다른 조항과의 관계

제20조(개인의 이동): 접근성의 하나로서 개개인의 이동성에 대한 보장이 별도로 규정(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의 이동 촉진, 이동보조기구 및 보조 기술, 동반 지원 접근성 장려, 전문 담당자들의 훈련, 보조 공학 기술 기업들의 이동성 참작)

제21조(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등에 대해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추가비용 없이, 수어, 점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확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민간기업, 언론매체 권장, 수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도모)

# 관련된 국제규범

##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1982)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2)’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강조함

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일상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 쉽게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자료(점자, 수어 등)의 마련을 권고함

- 평등과 참여의 원리, 종합 정책에 장애인 정책 포함
- 장애 개념의 광범위성 제시, 장애 개념의 명확화
- 장애인이 처해있는 사회 환경문제의 인식과 해결
- 바람직한 사회상으로서의 공생의 원칙

# 관련된 국제규범

##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1993)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1993)’에서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 건물, 대중서비스와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을 구분

(a)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

1. 당사국들은 물리적 환경에서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착수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기준 및 지침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주택, 건물, 대중교통서비스 및 기타 교통수단, 거리 그리고 기타 야외 환경 등 다양한 사회의 분야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관련된 국제규범

###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1993)

2. 당사국들은 건축, 건설 기술자와 기타 물리적 환경 건설 및 설계 전문가들이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 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접근성 보장 요건은 설계 과정 초기부터 물리적 환경 설계 및 건축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접근성 기준 및 표준이 개발될 때 장애인단체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단체는 또한 공공 건설 작업이 설계되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접근성이 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관련된 국제규범

###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1993)

#### (b)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

5. 장애인, 장애인 가족 및 옹호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진단,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정보는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제공
6. 당사국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접근가능한 정보서비스 및 문서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점자, 테이프 서비스, 대형인쇄 및 기타 적합 기술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면 정보 및 문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적합 기술은 청각장애인 또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구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 관련된 국제규범

##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 규칙(1993)

7. 청각장애아동의 교육, 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서 수화의 사용이 고려. 수화통역서비스는 또한 청각장애인 간의 그리고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 필요
8. 기타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9. 당사국들은 미디어—특히 TV, 라디오, 신문—의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10. 당사국들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컴퓨터 정보 및 서비스 시스템이 처음부터 접근가능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변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정보서비스가 접근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개발할 때 장애인단체와 논의해야 한다.

## 관련된 국제규범(IDA:국제장애인연합)

- 법률은 모든 새로운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관련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 합리적인 기한 내에 기존의 모든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국가적 접근성 계획이 있는가?
-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에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었는가, 그리고 과정을 감시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간점검 기준 (intermediate benchmarks)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 계획을 법률로 구속하고 있는가?

## 관련된 국제규범(IDA:국제장애인연합)

- ▶ 국가가 관련 접근성 기준을 채택했는가? (전문적인 수어 통역 서비스, 기술 기기 및 그 밖의 통신 지원 장비와 부가적이고 대안적인 통신 방법과 수단 및 형식을 포함한 건물, 교통, 웹사이트, 통신)
- ▶ 국가가 수어통역사 훈련을 활성화하고 개발했는가,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통역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가?

## 관련된 국제규범(IDA:국제장애인연합)

- ▶ 국가가 기술 기기와 그 밖의 통신지원장비 및 부제 설명과 같은 부가적이고 대안적인 통신 방법과 수단 및 형식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훈련을 활성화했는가?
- ▶ 국가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조했는가, 이러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적인가?
- ▶ 기준을 의무적인 요건으로 함으로써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공공조달 법률(경쟁입찰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품과 서비스 구매)을 채택하고 있는가?

# 관련된 국제규범

##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 인천전략

- 장애인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증진
-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사회 보호의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교육의 확대
-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 재난 위험 감소에서의 장애 관점 보장
-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 UN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및 이행
- 국내법과의 조화 가속화 하위 지역 및 지역 간 협력 증진

#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 제9조 접근성

위원회는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건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최소 크기, 용적률, 건축 일자에 의해 제한되고, 아직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많은 웹사이트가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며, 청각.지적.정신 장애와 같은 각각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웹 접근성도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을 우려함

#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 제9조 및 일반 논평 2호에 따라, 건물의 크기, 용적률, 건축 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각 및 기타 장애인이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2, 3차 시민사회 보고서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에 대한 1차 심의에서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1. 6. 발표한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도시인 서울의 저상 버스 보급률은 53.3%로 최상위인 반면 농촌 지역인 충청남도의 보급률은 9.2%로 최하위이다.
- ▶ 한편, 장애인을 위한 대체교통수단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농촌지역이 약 17.9% 높다. 하지만 중소도시·농촌지역일수록 운영시간이 짧고 미리 예약을 해야만 콜택시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는 심야시간 운행으로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에서는 절반 넘는 곳에서 심야시간에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비장애인 시민들은 택시나 야간 버스 등을 이용하지만 장애인은 밤에 이동하지 못하는 차별이 초래되고 있다.

## 2, 3차 시민사회 보고서

- ▶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격차는 운영형태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근 지역의 하차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인근 지역의 하차가 금지되거나 예약을 해야 이동할 수 있다.
- ▶ 도시간 이동 버스(시외, 고속버스) 중 접근 가능한 버스가 단 한대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 장애계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간 이동 버스를 요구해왔다. 결과 2019년부터 4개 노선에 10대의 버스가 시범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2021년 갑자기 3개 노선이 폐지되고 1개 노선에서 왕복 2대만 운행되고 있다.

## 2, 3차 시민사회 보고서

- ▶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은 웹사이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태블릿),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족
-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규정된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은 개인 및 단체의 정보 접근성 보장 노력에 대한 포상 및 표창, 실태조사, 표준화 및 기술개발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의무화와 정부의 우선 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선정 및 고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단말기 등의 제작업체 등 민간의 자발성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 ▶ 따라서 이것으로는 실질적인 웹 접근성 보장에 한계가 따르기에 모든 장애 유형이 접근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무인 정보 단말 장치 등의 제작이 의무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 관련법을 개정해 건축물의 규모나 건축 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를 의무 규정 포함 및 국내법 개정
-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 채택,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 확립, 지방정부에서의 접근성 모니터링 강화
- 교통에서의 다양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확충 및 교통 관련 정보 접근성(버스노선, 탑승 안내 등), 공공장소와 환경 개선
-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특히,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 모든 장애인을 위해 점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수어, 읽기 쉬운 자료, 평이한 언어, 오디오 설명, 자막과 같이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텔레비전과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방식의 개발, 증진, 사용을 위해 적절한 재정을 할당하며, 장애인의 다양성에 적합한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을 보장할 것
- 읽기 쉬운/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그 외 접근 형식, 방법과 수단을 통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지침이 포함된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마라케시조약 이행 촉구)

## 2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를 수어를 포함한 자국어와 소수자 언어로, 또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의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민간단체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널리 배포하고, 이를 인권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이동 보장

#### 현황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는 전체인구의 30%, 고령화, 장애인구 증가(15,511천명)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2~26). 차별없는 이동 환경 조성

#### 개선 필요사항

-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 : 버스, 도보, 지하철, 콜택시(특별교통수단)
- 저상버스 도입, 항공기 이동편의시설 미흡, 휠체어 탑승버스 참여 저조  
(저상버스 도입률 30.6%, 항공기 적합 설치율 73.7%, 여객선 설치율 37.8%)

#### 추진 과제

- 노선버스 대폐차를 통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및 법정대수 상향, 차량 종류 다양화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 비도시지역 법정대수 상향 150명에서 100명당 1대)  
(민간대형버스 및 임차바우처 택시 활용, 다인승 휠체어 탑승차량)
- 철도 미운열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 시외버스 도입 추진
- 전국 단위의 모바일 앱, 전화 등으로 이용 예약 가능한 전국 통합예약서비스 구축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여객시설 교통수단 기준 개선 추진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

### 편의시설 확대

- 연구('23) ⇒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23) ⇒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24, 법령 개정)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예시)

면적기준	건축물 용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최소 면적기준 삭제(원칙) 및 축소(예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과 연계 ex) 건축법령 상 건축물 용도 추가 시 편의시설 설치의무(원칙), 시설 특성따라 설치의무 면제(예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되는 대상시설(건축물 용도)의 의무·권장 설치 편의시설 종류 명시</li> </ul>

### 설치의무 없는 기존시설 설치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컨설팅, 홍보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방안 모색
  - \* 현재 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행위(신축, 증개축, 용도 변경 등)가 발생한 시설

### 설치 안내

- 복지로 '복지지도'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정보 제공('23. 시범운영)
- 이력·현황 관리 위한 편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대

### 인증 의무 확대

- 문화·소비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민간 시설(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 등)로 확대

제도·여건분석 연구('23)

이행당사자 의견수렴

법령 개정('2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인증 활성화

-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확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  
BF 인증기관 및 시설 관리, 인증 교육·연구, 통합시스템 관리 등 체계적·통합적인 BF 인증제도 지원관리 수행

- BF 인증기관 확대

('22. 9개소)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생산성본부인증원, 부동산원, 환경건축연구원, 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건물에너지기술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농어촌공사

**수고하셨습니다.**





# 05

## 개인의 자유, 안전(제14조)

정다혜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개인의 자유와 안전

CRPD



202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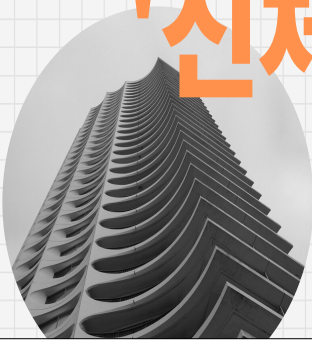
정다혜 변호사

사단법인 **도로?**

1.

#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 '신체의 자유 및 안전'



국제인권협약  
선택의정서  
특별절차  
조약기구  
헌장기구





##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탈시설  
코로나19



강제입원  
자의입원  
비자의입원

2.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심의 2-3차'



[쟁점목록]

14. 각 항목 관련 진척사항(a~e)

- 1) 정신장애를 포함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조항 폐지
- 2) 「정신건강복지법」 조항에 따라, 정신보건의로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로 서비스가 충분히 고지 후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 마련 여부
- 3) 병원, 특수시설에서 장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4) 장애인에게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편의조치 여부
- 5) 형사사법제도에서 재판부적합에 대한 사항을 없애고, 장애인에게 다른 이들과 동등한 적법절차를 보장했는지 여부

[정부보고서]

<쟁점목록 단락 14-a에 대한 답변>

78. 대한민국 정부는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막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 및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2016년 5월 29일)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2017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② 질환이 급성기 발현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적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의 박탈은 필요 최소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보고서]

79.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필요성 및 자해 위험 등 환자의 건강, 안전 등 측면에서 비자의 입원 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신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舊 정신보건법)상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동의 및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입원 절차도 강화하여 강제입원 환자 최초 입원 시 2주 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하며, 전문의 2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여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2주 이상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보고서]

80. 2018년 5월부터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여,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중립적 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정신건강전문교육을 1~3년간 수련한 인력),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당사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모든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다. 또한 최초 입원 이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 심사 주기 또한 기존 최초입원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하여 정신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하였다.

[정부보고서]

<쟁점목록 단락 14-b에 대한 답변>

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입원 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 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보고서]

82. 향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및 재산보호 등 권리보호를 위해 공공후견인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입원 시 의사결정, 투약 등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절차보조제도 도입 등을 통해 권리 고지 및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의사결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보고서]

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결정하는 ‘자의입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자의 입원율: 38.4%(2016년 12월 31일) → 62.9%(2018년 4월 23일). 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 당사자에 대한 고지, 정보 제공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치료를 선택하는 현상이 크게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부록 <표 14-1> 참고).

[정부보고서]

84.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 및 재산보호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활동지원 및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하고 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소 연장 등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 486명이 2017년 6월부터 한정후견(임시후견 포함)을 실시하고 있다. 후견인의 업무는 월 2회 이상 정신질환자 방문 및 상담, 법원 관련 업무, 입소연장, 입원결정 동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후견인 활동지원비 1인당 월 200천원씩 총 1,166백만원의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의사 표현의 제약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보고서]

85.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퇴원 신고, 입원 적합성 진단을 위한 추가진단 의사 배정 등을 위해 입·퇴원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입·퇴원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비자의 입원(전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앙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정부보고서]

86. 또한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관련해서 강제 입원 및 치료 기준 재정비를 위해 강제 입원 및 치료 등에 대하여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인 및 종사자 등 교육을 하였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의사결정 지원 강화를 위해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부양 의무자에 우선하여 입원 동의를 하도록 하여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을 제재하였고, 성년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및 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 구축하였다.

[정부보고서]

<쟁점목록 단락 14-c에 대한 답변>

87. 「인신보호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특수시설에서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면 현행 법령상 법원을 통해 충분히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요건 등 입원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016년 5월 29일)되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본인을 위한 치료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입원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정부보고서]

88. 병원 및 특수시설에서 벌어지는 자유의 박탈을 점검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5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정신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조사 실시하고 있다(2015년 114개소, 2016년 100개소, 2017년 209개소 실시).

89.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국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 점검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안전·및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였다. 2016년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모 정신병원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정부보고서]

<쟁점목록 단락 14-d에 대한 답변>

90.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사법지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우선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를 전담하는 민원상담위원을 두어, 각급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 등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법률상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 지원업무를 하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매년 설치 법원을 확대하고, 전담 민원상담위원의 상담건수,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우선지원창구의 설치 범위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부록 <표 14-2> 참고).

[정부보고서]

91. 정부는 법률용어 수화통역 개발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정 수화통역이 법률용어에 맞고 정확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표준화된 법률용어 수화통역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정 수화통역인, 법관 등 법조인력, 청각장애인에 대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법률용어 수화집을 발간하여 전국 수화통역단체 및 각급 법원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예산안에 개발비와 수화집 발간비를 포함하였다.

## [정부보고서]

### <쟁점목록 단락 14-e에 대한 답변>

92.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는 장애인에게 다른 이들과 동등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농아자인 경우에는 수화 등으로 통역을 하도록 하는 등(「형사소송법」 제181조) 장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부록 <표 14-3>, <표 14-4> 참고).

## [시민사회보고서]

The Korean DPO and NGO Coalition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2 Aug 2022	<a href="#">View document</a>
The Republic of Korea-Additional Report 2019-2022 to the CRPD	Additional Info from State party	CRPD	Republic of Korea	22 Aug 2022	<a href="#">View document</a>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6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Committee on Labor Rights of Republic of Korea (SADD CLR)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5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 (KAMI)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3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 (KAMI)-Additional information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3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Korean Autistic Peoples Organisation-estas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23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Korean Disability Forum (KDF)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19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RIDRIK)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19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Duroo-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et al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12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06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Korea Association of Welfare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01 Jul 2022	<a href="#">View document</a>
Korea Disability Law Association	Info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the session)	CRPD	Republic of Korea	30 Jun 2022	<a href="#">View document</a>

## [시민사회보고서]

National report #83 says that the rate of voluntary hospitaliza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creased by more than double, but this is just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consented hospitalization which is classified as the type of voluntary hospitalization. However, consented hospitalization makes it possible to be hospitalized by his or her will but difficult to be discharged without consent of the guardian, which i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disguised as voluntary hospitalization. Actually, most of the increment in voluntary hospitalization falls under consented hospitalization.

As of 2020, there are 20,710 patients hospitalized involuntarily, accounting for 33.6% of the total number of 62,702 hospitalized patients. However, the government classifie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s 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the number of consented hospitalizations which is actually illegal involuntary hospitalization detouring the requirements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s 13,443 and by adding this numbe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reaches up to 56%.

## [최종견해]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rt. 14)

31.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still subjected to laws that deprive them of their liberty on the basis of impairment, and that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to ensure that those persons are not subjected to arbitrary treatment, including confin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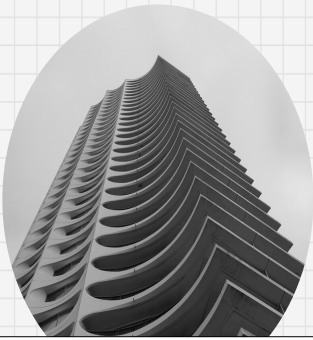
32. The Committee recalls it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peal all relevant legislative provisions, including the Civil Law on Adult Guardianship and the Mental Health Law provisions allowing for the involuntary deprivation of liberty on the grounds of impairment and perceived dangerousness to themselves or others, introduce legislation that ensures non-discrimination through, for example, procedural accommo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uring interrogation and detention, explicitly prohibit the forced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ground of impairment and restore the rights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b) Establish a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at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not subjected to arbitrary and forced treatment, in particular treatment that results in confinement.

3.

신체의 자유  
그리고 안전



탈시설  
코로나19

강제입원  
자의입원  
비자의입원